

청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7나1421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856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7나142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박종일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섭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4.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8. 23. 선고 2017가소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2013. 12. 17.경 C와 함께 공동계주로서 구좌 수 30구좌, 1구좌 당 계불입금 월 100만 원(실제로는 식비 등을 포함하여 102만 원이며,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마다 매월 이자 30만 원을 합산한 130만 원)이며, 순번이 된 사람은 계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수령하는 순번계(이하 ‘17일계’라 한다)를, ② 2014. 4. 5.경에는 구좌 수 30구좌, 1구좌 당 계불입금

월 100만 원(실제로는 식비 등을 포함하여 102만 원이며,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마다 매월 이자 30만 원을 합산한 130만 원)이며, 순번이 된 사람은 계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수령하는 순번계(이하 '5일계'라 한다)를 각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C의 계원으로서 17일계의 순번 10번 구좌에 가입하고, 17일계의 계불입금을 C에게 불입하다가 2014. 9. 17.경 17일계의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 및 11.분의 계불입금 월 132만 원씩(= 식비 등 포함한 102만 원 + 이자 30만 원) 합계 264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5일계의 순번 15번 구좌에 가입하여, 5일계의 계불입금으로 피고에게 2014. 4.분부터 2015. 1.분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식비 등을 포함하면 매월 102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라. 한편, C가 2014. 12.초경 17일계의 운영을 포기하면서 그 무렵 17일계가 파계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한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17일계의 2014. 12.분 계불입금 명목으로 식비 등을 포함하여 102만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경 5일계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파계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5일계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 을 제1, 2,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앞서 본 바와 같이 5일계가 파계됨으로써 원고가 5일계를 탈퇴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 상당의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5일계의 운영형태상 계주인 피고와 계원인 원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5일계 계불입금은 총 1,260만 원{= 원고가 지급한 계불입금

합계 1,020만 원 + 이자 30만 원 × 8(5일계 순번 3번부터 10번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이 된다.

2) 17일계의 경우 원고는 공동계주인 C 측 계원임에도 피고는 17일계가 파계된 이후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2014. 12.분 계불입금 102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동계주인 피고와 계원인 원고 사이에 매월 30만 원씩 더하여 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17일계 계불입금은 총 132만 원이 된다.3) 그런데 피고는 2016. 10. 14.경 원고에게 같은 해 12. 26.까지 위 계불입금 상당의 정산금 합계 1,392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확약하였다.

위 확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합계 1,39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와 C는 5일계를 공동계주로서 운영하였고, 원고는 C 측 계원으로 5일계에 가입하였다.

C가 5일계의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5. 1.경 파계됨으로써 피고는 피고를 단독계주로 하여 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계원들만으로 5일계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말경 5일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5일계를 탈퇴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공동계주였던 C 측 계원에 불과하므로 5일계가 파계되었다 하더라도 C와 기지급한 계불입금을 정산해야할 뿐,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5일계 계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9. 17.경 17일계의 순번 10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는 17일계의 종료일인 2016. 5. 17.까지 계불입금 및 이자 합계 2,640만 원(= 132만 원 × 20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계금을 수령한 후 2014. 10. 및 11.분 계불입금과 그 이자 합계 264만 원, 2014. 12.분 계불입금 중 102만 원만을 각 지급하고 그 이후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7일계 미납 계불입금으로 합계 2,274만 원(= 2,640만 원 - 36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 9.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2,274만 원의 17일계 계불입금

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5일계 계불입금 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바, 위 자동채권액이 원고의 5일계 계불입금 반환청구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5일계 계불입금 반환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17일계의 경우에도, 원고가 2014. 9. 17.경 17일계의 계금을 수령하면서 피고 및 C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그 이후의 계불입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2014. 12.분 계불입금 102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반환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음성 및 제1심 증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확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5일계 계불입금 상당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5일계의 단독계주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 3, 6, 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다만 D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C가 공동계주로서 5일계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피고가 단독계주로서 5일계를 운영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5일계표(갑 제1호증의 1)에는 피고와 C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된

17일계표(원 · 피고가 각자 보관하고 있는 것의 기재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농협 계좌번호와 C의 신한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된 점은 동일하다)와 달리 피고의 계좌번호만 적혀 있고, 이 점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5일계표(을 제1호증의3)도 같다.

② 피고는 17일계를 시작한 약 4개월 후부터 5일계를 시작하였는데, 17일계표에는 피고와 C가

공동계주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바, 만약 C가 5일계의 공동계주였다면 17일계표와 달리 5일계표에 C의 계좌를 표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5일계표에는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계원들 비고란에 ‘C’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위 5일계표 비고란에 ‘E’이라고 적혀 있는 계원도 있는 점,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5일계표에는 일부 계원들의 비고란에 ‘C 소개’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 피고 쌍방이 소지하고 있는 5일계표 어디에도 C의 계좌번호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공동계주로 5일계에 참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에게 5일계 계원 일부를 소개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④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17일계 계불입금 지급을 구하는 계금반환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소417)에서 “원고는 C에게 1,000만 원을 2017. 2. 28.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만약 C가 5일계의 공동계주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송절차에서 C에 대한 5일계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17일계 계불입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채무를 면하거나 감축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상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채권자 F가 C의 원고에 대한 17일계 계불입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에 따라 위 조정에 따른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⑤ 5일계의 순번 6번, 12번 계원인 G는 2017. 5. 16.경 피고에게 ‘C의 계원으로서 5일계의 순번 6번과 12번 2구좌에 가입하였고, C의 안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의1)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G는 2017. 11. 8. C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에 관하여 충북제천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5일계의 계불입금은 피고 명의 계좌로 납부했다. C가 5일계의 공동계주라는 사실은 피고로부터 말로만 들었지 C를 계주로 하여 5일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다. 조카(H)가 계를 하자고 하여서 5일계에 가입한 것뿐이다. 피고 부탁에 따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확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는 원고에게 피고가 단독계주로 운영하는 5일계에 이모인 G, 조카 I, 동생 J 등을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정산액의 범위

가) 계불입금 원금

5일계의 계불입금이 월 100만 원인 사실, 원고는 5일계의 단독계주인 피고에게 2014. 4.부터 2015. 1.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납부한 후 5일계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불입금 합계 1,000만 원(= 100만 원 × 10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5일계 계불입금이 월 102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월 2만 원을 추가한 102만 원씩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5일계의 구좌 수는 30구좌인데, 이자를 제외하고 계원들이 수령할 계금 원금은 3,000만 원인 점, ② 위 102만 원 중 2만 원은 계원들의 젓날 식비 등 실비 명목으로 납부된 점, ③ 위 2만 원은 그 용도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5일계의 계불입금은 매월 100만 원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초과하는 월 2만 원 부분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불입금 이자

계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의 정산방식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 계원은 계주에게 이미 수령한 계금에 관하여 그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계주는 계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계금에 관하여 납입받은 계불입금을 이자 없이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2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은 계불입금으로 이자 30만 원을 합산하여 매월 130만 원을 납부하고, 후순위로 계금을 타는 계원은 계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수령하는 형태로 5일계가 운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후순위로 계금을 타는 계원이 계금 수령시 이에 더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금을 타지 않은 채 계에서 탈퇴하는 계원에 대하여 계불입금 정산 시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금을 미수령한 경우의 계불입금 정산 시에도 이자를 더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계주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가 모집하거나 자기의 계원으로 편입된 계원에 대하여만 계불입금의 징수권한을 가지거나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자신의 계원이 아닌 다른 계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불입금 징수권한도 없고, 계금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파계에 따른 계불입금의 정산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관계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다6884(본소), 2005다6891(반소) 판결 참조}.

보건대, 원고가 C 측 계원으로서 17일계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14. 9. 17.경 17일계의 계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 및 11.분의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실, 2014. 12.초경 17일계가 파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0.분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C의 17일계 계주로서의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불입금 징수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일계 계불입금 상당의 정산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7일계 계불입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C 측 계원으로서 17일계에 가입한 사실, 2014. 12.초경 17일계가 파계된 사실, 원고는 17일계가 파계된 이후인 2014. 12. 17. 피고에게 17일계의 12.분 계불입금 명목으로 식비 등을 포함하여 102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불입금 상당의 돈을 징수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4. 9. 17.경 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계주의 지위를 피고가 C로부터 승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02만 원을 지급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102만 원에 더하여 약정에 따른 이자 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17일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추가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기, 판사 오탉환, 판사 류연중